

##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, 「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, 「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8. 10. 25.

영 동 군



### 1. 위탁대상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영동군 장애인복지관
- 위치 :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17
- 규모 : 연면적 1,388.71㎡ / 지하1층, 지상3층
- 주요시설

| 구 분  | 면적(㎡)    | 주 요 시 설  |
|------|----------|--|
| 계    | 1,388.71 |  |
| 지하1층 | 109.93   | 기계실, 전기실, 물탱크실   |
| 지상1층 | 546.65   | 통합사무실, 순회재활서비스센터, 상담실, 다목적실<br>작업훈련실, 자립생활정보센터, 식당                   |
| 지상2층 | 457.60   | 사회통합실, 사무실2, 언어발달실, 심리발달실,<br>가족대기실, 테라스, 능력개발실, 중증장애인자립<br>생활능력개발센터 |
| 지상3층 | 274.53   | 관장실, 사무실, 회의실, 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센터,<br>오늘의 희망터, 내일의 약속터                     |

2. 위탁기간 : 2019. 1. 1. ~ 2023. 12. 31.(5년)

### 3. 위탁사무

-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
-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
- 시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
-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

### 4. 위탁조건

- 장애인복지법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
- 영동군 위탁과 관련된 조례 및 위·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
- 시설 공간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,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 사용 불가

### 5. 고용승계

- 새로이 수탁 받는 법인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현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.
  - 영동군장애인복지관(부속시설 포함) 종사자 고용 승계

### 6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어야 함.
-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에 장애인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
-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능력, 공신력이 높고, 사업인력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및 연간 운영경비 일정규모의 재정 부담 가능 법인(수탁확정후 자부담협약서 명시)
  - ▶ 제외대상
    - 타 법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
    -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과 각종 법령위반으로 처벌(금고, 벌금이상 형)을 받은 대표자(시설장 포함)는 신청 불가

-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(예산횡령, 법인명의 대·차용, 인권착취등)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민·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법인(법인 대표자, 시설장 내정자 포함)
-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
- ※ 수탁자 선정 후 발견시,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.

## 7. 시설장의 자격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2조 「별표5」 기준에 해당되는 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

## 8.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18. 10. 25. ~ 2018. 11. 13.(20일간)
  - 영동군홈페이지 '고시공고'란에 게시
- 접수기간 : 2018.11.09.(금) ~ 2018.11. 13.(화)(3일간) 09:00~18:00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제출(인터넷·우편제출 불가)
  - ※ 접수기간내 토·일요일은 미접수
  - ※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
- 장 소 : 영동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(043-740-3571)
- 신청서식 : 영동군홈페이지(<http://www.yd21.go.kr>) '고시공고'란에 게시

## 9. 구비서류

- ①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
- ② 각서
- ③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(예정자) 자격증사본·이력서·경력증명서
- ④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
  - 법인 등기부등본(최근1개월 이내), 법인인감증명, 법인정관, 법인설립허가증 사본,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승인서, 임원현황, 이사회회의록(수탁운영 신청 결의 내용)
  -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(재산목록,

기본재산 대비 부채비율 기재하여 함께 제출, 부동산 등기부 등본, 잔고증명 등 증빙서류 첨부)

- ⑤ 법인의 최근 운영실적('16 ~ '18. 10월 공고일 현재까지)
- ⑥ 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('16 ~ '18. 10월 공고일 현재까지)
- ⑦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('19. 1. 1. ~ '23. 12. 31. 30장 이내, 15부)  
- 사업계획 요약서 (5장 이내, 15부) 첨부
- ⑧ 법인재정부담 약정서
- ⑨ 대표자 사 용 인감계
- ⑩ 기타 수탁자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서류

※ 제출서류

- 영동군 홈페이지 '고시공고' 란의 신청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목차를 삽입한 후 매장마다 페이지를 부여하여 1권으로 편철하여 15부 제출(\*원본 1부, 사본 14부)
- 모든 작성서류는 A4용지에 W/P로 14포인트 기준 상철 작성, 견출지 부착
- 설명자료 PPT(USB)는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

## 10.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

- 심사일시 :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심의일정 별도 통보
- 심사장소 : 영동군청 상황실
- 선정방법 : 영동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(1개소)
  - 심의방법 : 서류 및 면접심의
  - 심의항목 : 수탁자의 공신력, 재정능력, 사업수행 능력,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
  - 심사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(소수점 두자릿수)를 획득한 법인이 협약 대상 1순위이며,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약체결.
  - 동점일 경우, 재정능력(자부담 능력)이 높은 법인,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점수가 높은 법인 순으로 결정

- ※ 신청접수결과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의를 실시하며, 심의결과 평균 7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여 재공고 실시
- 면접방법 : 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
- ※ 대표자 또는 시설장(예정자)은 사전에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계획을 통보하여야 함.
- ※ 대표자 또는 시설장(예정자)가 아닌 자가 발표할 경우 대표자 위임장을 첨부 (사전 발표요지 준비 및 프리젠테이션 USB 전산파일 첨부)
- ※ 사업계획 발표는 10분 이내(프리젠테이션)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
- 선정자 발표 : 심사 결정 후 수탁운영자 개별 통지(1순위자만), 그 외 영동군홈페이지 참조
- 협약체결
  -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고,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.(※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기한 내 사유서 제출)
  - 협약(계약)서는 공증을 원칙으로 하고 공증 비용은 수탁법인에서 부담

## 11. 기타 및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(수정)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·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.
- 자부담금 확보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으로 선정 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간 법인부담액을 자체부담금으로 확정 위·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매년 출연하여 장애인복지관 사업비로 충당함.
- 수탁자 신청자 접수 현황은 비공개함.
-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

- 본 공고내용의 미숙지·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시 영동군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, 문의전화는 영동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(043-740-3571)으로 하시기 바람.

붙 임 : 신청관련서류 첨부 참조